의안번호	제 7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11월 4일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71 호

제출연월일 : 2014년 11월 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01년 정부업무 지방시범이양 정책에 따라 보급종자 관련 사무를 인수받아 운영중이나, 시설운영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방비 투자 부담 가중으로 보급종자 생산·공급 사무를 국립종자원으로 환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 보급종 생산·공급 사무의 국가환원 추진에 따라 관련 공유재산을 국가(국립종자원)로 무상양여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국가환원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

○ 처분기간 : 2014. 10. ~ 2015. 6.　　※이양시기 : 2015. 1. 1.

○ 처분사유 : 식량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국가사무 환원

○ 처분방법 : 도유(행정)재산 무상양여(도→농식품부)

○ 처분대상

- 토　지 : 제천시 신월동 1108-1번지 등 4필지, 15,995㎡(2,609백만원)
- 건　물 : 청사 등 9동, 4,376.98㎡(931백만원)
- 공작물 : 담 등 16종(244백만원)

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붙임 >

공유재산 처분(양여)현황

○ 토 지

소 재 지	면적(㎡)	공시지가(원)	토지기준시가(원)	비고
제천시 신월동 1108-1	13,811	181,500	2,506,696,500	
제천시 신월동1108-2	528	30,600	16,156,800	
제천시 신월동 1110-4	929	35,600	33,072,400	
제천시 신월동 산63-16	727	74,200	53,943,400	
합계	**15,995**		**2,609,869,100**	

○ 건 물

소 재 지	면적(㎡)	용도	건물기준시가(원)	비고
제천시 신월동 1108-1	493.35	청사(본관)	153,431,850	525.77㎡
〃	32.42	청사(지하실)	6,548,840	
〃	20.64	청사(수위실)	2,167,200	
〃	84.81	관리사	8,905,050	
〃	45.76	관리사	13,178,880	
〃	2,125	정선공장 및 저장고	429,250,000	3,700㎡
〃	525	정선공장(2층)	106,050,000	
〃	525	정선공장(3층)	106,050,000	
〃	525	정선공장(4층)	106,050,000	
합계	**4,376.98**		**931,631,820**	

○ 공작물

소 재 지	주명칭	수량	금액(원)	비고
제천시 신월동	담	1	9,337,910	
	정문	1	673,058	
	지정	1	4,939,855	
	축대	1	2,749,580	
	포장	1	4,201,532	
	난방장치	1	3,590,527	
	작업장치	7	127,811,778	
	기타잡공작물	2	87,073,921	
	정선폐부산물처리장	1	3,799,990	
	합계	**16**	**244,178,151**	

공유재산관리계획

2014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5	486,279.6	47,631,047				5	486,279.6	47,631,047
		건물	2	5,274.22	12,331,000				2	5,274.22	12,331,000
		기타									
	매입	토지	4	343,455.6	38,790,791				4	343,455.6	38,790,791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142,824	8,840,256				1	142,824	8,840,256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2	5,274.22	12,331,000				2	5,274.22	12,331,000
		기타									
처분	계	토지	2	123,803	8,167,215	4	15,995	2,609,869	6	139,798	10,777,084
		건물				9	4,376.98	931,631	9	4,376.98	931,631
		기타				16	-	244,178	16	-	244,178
	매각	토지	1	5,248	220,424				1	5,248	220,424
		건물									
		기타									
	양여	토지				4	15,995	2,609,869	4	15,995	2,609,869
		건물				9	4,376.98	931,631	9	4,376.98	931,631
		기타				16	-	244,178	16	-	244,178
	교환	토지	1	118,555	7,946,791				1	118,555	7,946,791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4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계	토지	4건	15,995	2,609,869				
	건물	9건	4,376.98	931,631				
	기타	16건	-	244,178				
1	토지	제천시 신월동 1108-1 등 4필지	15,995	2,609,869	'15. 6	보급종 생산공급 사무 국가환원	국가 (국립종자원)	양여
	건물	제천시 신월동 1108-1	4,376.98	931,631	'15. 6	〃	〃	〃
	기타	제천시 신월동 1108-1	-	244,178	'15. 6	〃	〃	〃
2	토지		이	하	여	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